

의안번호	2204606
의 퇴 인	김태년 의원
회 답 일	2024.12.20.
추 계 번호	24B02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규정을 삭제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4,680만원, 2030년 5,43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 5,220만원(연평균 5,040만원)으로 추계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6.8	48.5	50.4	52.3	54.3	252.2	50.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제8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임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4년 11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표 2]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u>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u> 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u>자기 또는 유족</u> 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u>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u>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u>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u>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사업주”)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규정이 삭제되므로 불승인된 자에 대한 보험금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²⁾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상계하지 않으며³⁾, 보험금 수입에 따른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제도개요) 중소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수액 중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해당하는 기준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중소사업주란,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를 의미함(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 무급가족종사자란,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

2)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법령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족으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2020년 12월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 가족종사자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⁴⁾

- 중소기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중소기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중소기업주			가족종사자		
	신청(A)	승인(B)	승인률(B/A)	신청(A)	승인(B)	승인률(B/A)
2020년	17,831	17,819	99.9%	-	-	-
2021년	21,226	21,211	99.9%	944	939	99.5%
2022년	16,150	16,138	99.9%	1,820	1,817	99.8%
2023년	11,589	11,552	99.7%	1,721	1,718	99.8%
2024.10월	9,668	9,637	99.7%	1,466	1,464	99.9%

자료: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 중소기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원)

구분	가입자 수	1인당 기여금	보험급여 지급인원	1인당 평균 산재보험 급여액
중소기업주				
2019	31,568	484,374	486	10,971,779
2020	39,359	451,252	602	12,704,846
2021	48,103	485,508	726	11,566,918
2022	51,174	524,126	759	10,188,406
2023	48,384	581,467	802	11,233,250
무급가족종사자				
2021	902	124,834	2	4,670,695
2022	2,182	320,367	23	8,774,067
2023	3,135	410,344	37	8,408,015

주: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2021.6월부터 시행

자료: 고용노동부

4)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사회보험」, 2024.

- 개정안은 중소기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승인 요건을 삭제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변화는 산재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이하 수입증가분)⁵⁾과 산재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급여 증가액(이하 지출증가분)으로 구성됨
- 이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의 변화 중 지출증가분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지출 증가액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지출증가분)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증가 규모”에 “1인당 평균 산재보험 급여액”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사업대상자 수는 2023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기준 승인율(중소사업주 99.7%, 무급가족종사자 99.8%)을 토대로 산출한 가중치를 토대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산출하며, 승인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수 대비 보험급여 지급인원의 비중을 토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연간 산재보험 급여 지급인원을 산출
 - 2023년 기준 연간 산재보험급여 가입자 수 대비 지급인원의 비중(중소사업주 1.7%, 무급가족종사자 1.2%)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행 규정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 삭제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이 촉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2023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5)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의 변화 중 수입증가분은 증가하는 기여금으로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입에 계상되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표 5]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사업대상자 수(추정치)

(단위: 명)

구분	중소사업주	가족종사자
(2023년 기준) 사업대상자 수(A)	48,384	3,135
(2023년 기준) 승인률(B)	99.7%	99.8%
승인률을 고려한 가중치($C=100.0\%/B$)	1.003	1.002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 수(추정치)($D=A \times C$)	48,539	3,140
(2023년 기준) 산재보험급여 가입자 수 대비 지급인원의 비중(E)	1.7%	1.2%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 지급인원(추정치)($F=D \times E$)	805	38
(2023년 기준) 보험급여 지급인원(G)	802	37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 추가 지급인원(추정치)($H=F-G$)	3	1

주: 산재보험 급여 지급인원은 올림으로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산재보험급여액에 국회에 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 추가 지급인원”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표 6]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중소사업주					
개정안 단가(A1)	12.5	12.9	13.4	13.9	14.5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 지급인원(B1)	3	3	3	3	3
추가재정소요($C1=A1 \times B1$)	37.4	38.8	40.3	41.8	43.4
무급가족종사자					
개정안 단가(A2)	9.3	9.7	10.1	10.4	10.8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 지급인원(B2)	1	1	1	1	1
추가재정소요($C2=A2 \times B2$)	9.3	9.7	10.1	10.4	10.8
추가재정소요($D=C1+C2$)	46.8	48.5	50.4	52.3	54.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액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산재보험 급여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향후 산재보험 가입자 수 및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 수의 변화, 근로복지공단 승인률의 변화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이 촉진될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